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3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5.

발 의 자 : 문진석 · 김한규 · 박상혁
강경숙 · 김우영 · 진선미
모경종 · 백승아 · 김의겸
윤건영 · 김문수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무원이 인사·조직·처우 등 직무조건과 신상 문제에 관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,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와 피해공무원 보호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,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인사·징계상 조치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,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 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·교육 의무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만들어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55조의2 등).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5조의2(직장 내 괴롭힘 금지) 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(이하 “직장 내 괴롭힘”이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7조의2제1항 전단 중 “범죄 또는 성희롱을”을 “범죄,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범죄 또는 성희롱”을 “범죄,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”으로 한다.

제6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7조의5(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)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 제67조의2(고충처리)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·조직·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,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. ② (생략)	제55조의2(직장 내 괴롭힘 금지) <u>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(이하 “직장 내 괴롭힘”이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제67조의2(고충처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범죄,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③ <u>임용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 ④ ~ ⑥ (생략) <u><신설></u>	③ ----- <u>범죄,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④ ~ ⑥ (현행과 같음) <u>제67조의5(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)</u> ① <u>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 ② <u>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
---	--